

# 『밀겨울』정보공개서

㈜진성종합식품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 ㈜ 진성종합식품

#### < 주 의 사 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가맹사업법」이라 칭함)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 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 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 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20161238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및 최종 등록일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6.12.15.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11.28.

#### 『밀겨울』가맹사업본부 ㈜진성종합식품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인천광역시 계임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428-11(작전동)				
전화번호	032-545-2921	032-545-2921 팩스번호				
가맹사업 담당부서	가맹사업부	담당자 전화번호	032-545-2921			
홈페이지	http://www.myundahea.com/	담당자 이메일	jsfoods7@hanmail.net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 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 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를 가맹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목 차 >

-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3.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5.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6.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7.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8.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 9.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별첨 서류

[ 별첨 1 ] 최근 3년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 별첨 2 ] 당사가 정한 판매상품 및 권장가격 내역

#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 및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진성종합식품	영업표지	밀겨울 외 1개		
주 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428-11(작전동)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3.06.17.	2003.06.24.	신중현	032-545-2921	032-555-1350	
법인등록번호	102111-0320515	사업자등록번호	122-81-78578		

#### 2.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 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11.0.01	<b>사용인</b> 신중현 <b>사내이사)</b> ㈜진성종합식품	밀겨울 외 1개	인천광역시 :	계양구 아나지로 4	28-11(작전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4-11-11-11-1)			신중현	032-545-2921	032-555-1350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사는 정보공개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ㆍ합병 여부	다른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 • 합병일	주 소	대표자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운영권을 양수함	㈜오니규	밀겨울	2024.02.27.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59, 201호(문정동, 원영빌딩)	이명훈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운영권을 양수함	㈜오니규	오니기리와 이규동	2024.10.21.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59, 201호(문정동, 원영빌딩)	이명훈

㈜진성종합식품 『밀겨울』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밀겨울	
상 호	밀겨울 <u>점</u>	
상표(서비스표)	ӝ밀겨울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 제4012830760000호
상표(서비스표)	पुत्रकृ	출원 4020240065418 호
	w 밀겨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업표지
그 밖의 영업표지	明月月皇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업표지
	밀겨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업표지

#### 5.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단위:천원, 부가세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4,988,894	2,983,387	2,005,506	3,156,634	146,589	142,040
2022년	6,241,996	3,934,796	2,307,200	5,157,151	326,467	301,964
2023년	7,541,928	4,275,436	3,266,492	7,269,386	682,581	411,191

- ※ 그 근거자료는 [별점 1]과 같습니다.
- 2)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영업표지	аг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OH표시	인포	매출액	상한	하한		
		해당 없음				

#### 6. 가맹본부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

☞ 당 사의 임원은 모두 가맹사업 관련 임원이며,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은 없습니다. 가맹사업 관련 임원의 자세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이듬	연 역기	기간	재직 회사 및 직위	담당 업무		
신중현	대표	2018.11.27. ~ 현재	㈜진성종합식품 사내이사	회사 업무 총괄		

#### 7.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임직원 수

☞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점	상근	비상근	역전구(당)	
2023년 12월 31일	1	0	26	

<sup>☞</sup> 당사는 반기 신고를 하고 있어, 2023년 하반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해당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

☞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했던 가맹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상호	영업표지	정보공개서등록번호	가맹 사업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오니기리와 이규동	20100100210	2009.04 ~ 현재	수제 삼각 김밥 전문 다른 업종의 가맹사업 운영

<sup>☞</sup> 당 사는 2024년에 해당 브랜드를 인수하였습니다.

㈜**진성종합식품** 『밀겨울』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당사의 지식재산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 <b>밀겨울</b> 상표(서비스표) 제43류	가맹점 영업과	출원 2016.12.08. 등록 2017.09.05.	출원 제4020160110375호 등록 제4012830760000호	㈜진성종합식품	등록일로부 터 10년
망표(서비스표) 제43류	관련된 일체의 권리	출원 2024.04.09	출원 4020240065418 호	㈜진성종합식품	-

- ※ 당사의 상표 중 출원번호 4020240065418 호를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 ※※ 귀하가 관계기관에 등록된 당 사의 특허, 상표, 서비스표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 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밀겨울』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짜 : 2017년 1월 2일

※『밀겨울』직영사업을 시작한 날 : 해당 없음

#### 2. 『밀겨울』연혁

☞ 『밀겨울』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 해당 가맹사업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리엠에이치 컴퍼니	밀겨울	이명훈	2017.01.02.~2017.10.19.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26길 7-1(가락동)
㈜오니규	밀겨울	이명훈	2017.10.20. ~ 2024.02.2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6길 62, 4층(가락동, 금하빌딩)
㈜진성종합식품	밀겨울	신중현	2024.02.27. ~ 현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428-11(작전동)

#### 3.『밀겨울』업종

☞ 『밀겨울』 업종의 대분류 및 소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어ㅠㅠ	업종				
영업표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밀겨울	외식업	기타외식	칼국수		

- 4.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해당 가맹사업의 전국 및 광역 지방 자치 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지역별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TICH		2021.12.31	•		2022.12.31	•		2023.12.31	•
지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8	8	-	9	9	-	6	6	-
서울	3	3	-	3	3	-	2	2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1	1	-	1	1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3	3	-	3	3	-	1	1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1	1	-	1	1	-	1	1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1	1	-	1	1	-	1	1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 ※ 2023년까지 직영점 및 가맹점 현황은 양수도 이전 가맹본부의 정보입니다.
- 5.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 경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의 수
-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 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사업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년	16	2	0	10	0	8
2022년	8	1	0	0	0	9
2023년	9	0	0	3	0	6

- ※ 2023년까지 직영점 및 가맹점 현황은 양수도 이전 가맹본부의 정보입니다.
- 6.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의 업종, 영 업표지 및 사업 시작일과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의 총 수
- ☞ 해당 가맹사업 외에 현재 영업 중인 직영 및 가맹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상호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업종	가맹사업	직영점/	가맹점의 수(	단위:개)
전세/경오	SH포시	등록번호	집중	시작일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오니기리와 이규동	20100100210	수제삼각 김밥전문점	2009.04.10.	45/0	45/0	35/0

- ▶ 당 사는 2024년에 해당 브랜드를 인수하였으며, 2023년까지 직영점 및 가맹점 현황은 양수도 이전 가맹본부 의 정보입니다.
- 7.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지역별 연간 평균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 ☞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천원, 부가세미포함)

	총	연간 평균	군 매출액	상	한	하	·한	산출
지역	가맹점 수	총 매출액	면적(3.3m²) 당 매출액	총 매출액	면적(3.3m²) 당 매출액	총 매출액	면적(3.3m²) 당 매출액	가맹점 수
전체	6	-	1	-	-	-	-	산정불가
서울	2	-	-	-	-	-	-	5곳 미만
부산	-	1	ı	1	-	-	-	-
대구	_	1	ı	1	-	-	-	-
인천	_	1	ı	1	-	-	-	-
광주	-	-	-	-	-	-	-	-
대전	1	1	ı	1	-	-	-	5곳 미만
울산	-	-	-	-	-	-	-	-
세종	-	-	1	-	-	-	-	-
경기	1	-	-	-	-	-	-	5곳 미만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1	-	-	-	-	-	-	5곳 미만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1	-	-	-	-	-	-	5곳 미만
경남	-	-	-	-	-	-	-	-
제주	_	-	-	-	-	-	-	-

- ※ 2023년까지 직영점 및 가맹점 현황은 양수도 이전 가맹본부의 정보이며, 각 가맹점별 매출액 확인 이 불가능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각 가맹점별 POS 시스템 및 매출액 집계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 ※※ 영업개월 수가 6개월 미만인 일부 가맹점의 매출액은 개점 초기 매출로 매출액을 추정하는 데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으며, 영업개월 수가 12개월 미만인 가맹점 매출액은 당 사가 월 평균 매출액 산정 후 이를 연간 평균 매출액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는, 당 사가 추정한 매출로 실제 가맹점에서 올린 매출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3.3 m)당 연간 평균 매출액은 [연간 평균 총매출액/평균 가맹점 면적(m)\*3.3] 산식으로 추정하였으며, 위 표에 기재된 상한과 하한 내역은 지역별 최고 매출과 최저 매출을 올린 매장의 매출액을 면적(3.3 m)당 매출로 환산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또한, 위 추정 매출액은 가맹점이 위치한 지역 및 상권, 실제 매장의 크기, 실제 운영한 영업개월 수, 가맹점사업자의 노력 등이 상이하므로 전국 평균 매장의 평균 매출액이 아니며, 귀하가 실제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8.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
- ☞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일)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6개	1,559일

- ※ 당 사의 평균 영업기간은 최초가맹점 계약체결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기준으로 기재되었 기에 양도양수 및 명의변경 매장의 경우 최초가맹점 계약체결일로부터 산정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9.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가맹지역본부의 상호, 주된 사무소의 주소, 대표자의 이름, 대표 전화번호, 관리지역 및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관리하는 가맹점 수
- ☞ 해당 없음 : 당사는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 및 가맹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10.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의 가맹본부의 연간 광고비 및 판촉비
- ☞ 직전 사업연도 말『밀겨울』과 관련하여 광고 및 판촉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 ※ 위 금액은 당 사의 작년 말 기준 손익계산서 상 광고선전비 및 판매촉진비의 내역입니다. 다만, 당 사는 2024년에 해당 영업표지 가맹사업을 인수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1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 1)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상호, 담당 지점이나 부서의 이름과 소재지, 안내 전화번호
- ☞ 당사가 정한 예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

- 2) 가맹금 예치절차
-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 당사가 체결한 피해보상보험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진성종합식품	가맹본부
피보험인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H청기가	가맹계약체결일 또는 최초 예치가맹금 납부일	
보험기간 	~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사업 개시일	
보험금액	예치 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 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가맹본부 경유→보험회사 접수 →보험회사 조사→지급 여부 결정→보험금 지급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치기관으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기관을 정할 수 있으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귀하에게 증권을 제출하고 당사가 정하는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성중합식품 『밀겨울』

# 3.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명령 여부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 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 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진성종합식품 『밀겨울』

#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의 부담

귀하가 『밀겨울』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다만,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기타 정한 품목 외 귀하와 협의한 별도 구입 비용 ]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최초 가맹금 : 개시지급금, 예탁금, 할부금의 첫 지불액, 선급임차료, 설비구입대금 등 명칭이 어떻든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 또는 계속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그관계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의 내역과 그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 당사의 최초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합계	7,700,000				(예외조건)
가맹비	5,500,000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반환 안됨	가맹점모집 및 개설 시 비용소요	개점 전 귀책사유 없는 해지 시 정산 후 반환
개점 전 교육비	2,200,000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반환 안됨	개점 전 교육비로 비용소요	개점 전 교육 미 이수시 반환

※ 가맹비 대가 내역: 영업표지 사용권 부여(₩2,200,000), 영업지역권 부여(₩1,100,000), 개점시 가맹점 운영 및 영업 노하우 대가(₩1,100,000), 기타 운영매뉴얼 등 각종 자료 제공 (₩1,100,000) 등

※ 가맹비 반환 조건 : 개점 이전 해지, 개점 이후 해지

1. 개점 이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 귀하의 변심 등 귀책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가맹비 총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점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개점을 준비하기 위해 이행했던 금액 과 그때까지 당사가 본 계약 이행을 위해 지출한 실비용을 정산하여 제한 후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맹비를 반환

하고 있습니다.

2. 개점 이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 당사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비는 개점 후 소멸 성 비용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진성종합식품** 

#### 2) 보증금, 담보목적물 등 계약 종료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되는 대가

☞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당사에서 수령하는 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부가세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반환 조건
합계	2,000,000			
계약이행보증금	2,000,000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물품 및 로열티 등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담보	계약해지 및 종료 시 정산 후 반환

**※ 계약이행보증금 수령 조건** : 당사가 제공하는 물품의 대금 및 파손, 광고.판촉 분담금, 로얄티 등의 기타 채무액 및 계약 미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 담보

※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조건 : 계약기간의 만료 및 해지로 인한 종료 시 영업표지 철거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제한 후 잔액을 상환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법」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금액	비고
합계	9,700,000	
가맹비	5,500,000	부가세포함
개점 전 교육비	2,200,000	부가세포함
계약이행보증금	2,000,000	부가세없음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치기관으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기관을 정할 수 있으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귀하에게 증권을 제출하고 당사가 정하는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최초 가맹금 외에 필수설비, 정착물, 인테리어 비용, 최초로 공급되는 상품의 비용, 정해진 기간을 넘길 때 추가로 생기는 금융비용 등 그 밖의 필요비용
- ☞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부가세포함)

		금액			
구분	지급대상	면적 49.5m²당 (구. 약 15평)	면적 3.3m <sup>2</sup> 당 (구. 약 1평)	지급 기한	비고
합계		1,100,000	-		
초도물품	가맹본부	1,100,000	-	개점 2일전까지	선결제 후배송

- ※ 위의 모든 비용은 구입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 사가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당 사 또는 귀하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 ※※ 위 표의 금액은 당 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매장의 크기, 구조, 점 주 선택사양, 구입품목, 구입수량, 설치기간을 초과하여 생기는 추가 비용 등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 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내역 및 지급대상은 당 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그 밖의 비용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인테리어, 간판, 주방 등 설비 시공 시 도면설계비 등 부담 기준
- ☞ 귀하는 인테리어, 간판, 주방 등 설비 시공하는 경우, 당 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가맹사업 전체의 동일성과 독창성 유지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간판, 주방 등의 설비는 당 사가 정한 시공매뉴얼을 준수하여 설계·시공하여야 합니다.
- 제하는 당 사가 정한 시공매뉴얼에 따라 직접 시공하거나 당 사 또는 당 사의 지정업체에 의뢰하여 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사의 노하우가 담긴 시공매뉴얼 보호를 위해 도면설계는 당 사 또는 당 사의 지정업체에서 진행하여야 하며, 귀하는 시공매뉴얼 제공, 도면설계, 관리감독등의 비용으로 금 이백이십만원(₩2,200,000)<부가세포함>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2) 집기·비품 구입 기준
- ☞ 귀하는 집기·비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당 사가 정한 사양에 따라 직접 구입하거나 당 사 또는 당 사의 지정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귀하는 당 사의 품질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당 사가 정한 집기·비품 등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귀하의 비용으로 재구입하여야 합니다.
- (3) 그 밖의 영업신고 및 허가,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화 및 인터넷 개설, TV 설치에 따른 부대비용 등은 귀하가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당사 조언 요청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자 배정→가맹희망자 선정 사업장 방문→입지 및 상권분석 →분석 및 결과 타당성 유무 통지→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요청이 없는 경우	가맹희망자 입지 도출→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 점포선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입지 선정 시 최종결정은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포의 하자 및 권리의 하자 등의 사유로 당사에 책임 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한편, 입지선정의 지연으로 인해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기준	계약·채용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당 사의 필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	미성년자가 아닐 것 피성년후견인 및 피힌정후견인이 아닐 것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자
종업원	당 사 및 가맹점사업자의 필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	미성년자가 아닐 것 피성년후견인 및 피힌정후견인이 아닐 것 직원관리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자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 내역 및 공급방법 ㆍ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 8) 최초 가맹금 납부 방법

☞ 영업 개시 이전 부담하는 최초 가맹금은 해당 항목별 해당 기한 내에 일시불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 1) 상표사용료, 리스료, 광고·판촉료, 교육훈련비, 간판류 임차료,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리모델링 비용,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 비용,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을 포함한 운영시스템 유지 비용 등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그 관계자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대가의 내역과 그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 ☞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등 정기지급금 (로열티)	가맹본부	매월 220,000	당월 20일	후불제로 반환 안됨	관리비로 비용소요	매월 1일~31일 기준 당월 20일 지급
리스료		해당 없음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광고·판촉료	가맹본부	광고·판촉 범위에 따라 협의된 분담비율 중 귀하 분담금	분담금 명세서 수령 후 10일 이내	광고·판촉 행사 진행 후 반환 안됨	광고·판촉 행사진행 비용소요	행사별 분담 기준은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7.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산출내역 서면통지	서면통지 기준에 따름	교육 후 반환 안됨	교육비로 비용소요	교육 미 진행시 반환
간판류 임차료		해당 없음				
영업표지 변경, 리모델링 등 점포환경개선에 따른 변경 비용		해당 없음		시공 후 반환 안됨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지 않음
각종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귀하의 귀책사유 발생 시 비용 산정	시공 시작 전일 까지	시공 후 반환 안됨	교체보수 비용소요	귀하의 귀책사유 외에는 교체보수를 요구하지 않음
재고관리비용		해당 없음				
회계처리비용		해당 없음				
POS 사용료		해당 없음		후불제로 반환 안됨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15%	약정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지연이자로 반환 안됨	지연이자 비용정산	해당 지급 항목의 약정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 로열티 대가 내역: 당사가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영업표지 사용권, 영원지역 보호권, 지속적인 영업 노하우 제공 및 경영지도 등에 대한 대가
- ※※ 위 내역은 가맹본부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 2) 당 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당 사 또는 당 사의 지정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요구) 또는 권장(권유) 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당 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 가맹금"이라 한다)와 관련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및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평 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 3) 가맹본부가 재고관리,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를 감독하는 내역

☞ 당사는 귀하의 재고관리에 대한 감독은 실시하지 않으며, 회계 범위의 감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점의 매출액 현황만 파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항목	내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해당 없음		
회계처리	가맹점 매출액 현황 보고	월 1회	매월 말일 기준 익월 5일 보고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

☞ 해당 없음 : 귀하가 당 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지급하 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귀하에 대하여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반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영업표지 사용료, 영업시스템의 계속적 이용료 등과 같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 중 미경과 잔여계약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가한 지식재산권이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당사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귀하에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며, 이 로 인하여 귀하가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는 이를 배상합니다.
- ※ 다만,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 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귀하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 당사는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호 문서에 의하여 합의 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2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상호 합 의한 경우에만 가맹계약을 해지합니다. 이에 귀하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 당사는 이를 배상합니다.
- ※ 위의 조건은 귀하가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에 당사 또는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각자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

- □ 귀하가 운영하는 『밀겨울』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처분일 2개월 전에 당사의 서면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귀하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승인을 얻은 양수인은 당사와 양도인의 잔여계약기간에 따른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의 경우 양수인의 부담으로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개점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 양수인이 당사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요청하는 경우, 양수인은 당사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양수인은 그에 따른 [가맹비, 개점 전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4) 계약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한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 귀하는 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하는 경우, 가맹점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당사의 영업표 지 등 당사를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등 기타 상징물을 계약 종료 후 1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철거 비용은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가하는 당사의 시스템이 반영된 운영매뉴얼, 규정집, 전단지, 광고물, 고객들의 신상명세를 비롯한 신용정보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계약 종료 후 10일 이내에 반환 또는 당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합니다.
- 기하는 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하는 경우,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에서 공급된 물품 중 유통기간 이내, 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물품 등의 완전물에 한하여 당사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당사는 공급가격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반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 귀하가 위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의 영업표지 등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u>위약금으로 위반일 1일당 금 이십만원(₩200,000)<부가세없음></u>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는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정산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한 경우 철거 완료 후 추가금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5.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한 다음의 사항
-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요구) 또는 권장(권유)할 경우 그 대상이 되는 품목,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1)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 위 (1)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여부에 기재된 주요 품목 중 전년도에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당 사 또는 당 사의 지정업체에서 구매한 대금의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를 기재하며,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 ※※ 위 표의 내역은 당 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의 명칭,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 간 관계의 내용,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그 직 전 사업연도에 해당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의 내용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특수관계인 포함)와 거 대할 것을 강제(요구) 또는 권장(권유)한 품목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해당 납품업체, 용역업체 등의 명칭, 그 경제적 이익의 내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을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 귀하는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 아래>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판매상품명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한 품목만 판매하여야 함	1차 : 구두 경고, 2차 : 2회 이상 서면 시정조치, 3차 :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당사가 지정하는 품목은 신메뉴 개발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당사가 지정한 상품 · 용역 이외의 품목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거래상대방에 대해 상품 · 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거래상대방	제한받는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업체	-1.1		1차 : 구두경고,
물품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사업자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제한된 거래상대방에게 무상지원 공급 및 판매 금지	2차 : 2회 이상 서면 시정조치, 3차 : 물품공급의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귀하는 당사가 제시한 권장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권장가격은 당사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가맹점의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가격이며,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 당사는「가맹사업법」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칼국수 전문점	밀겨울	해당 없음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점 간 직경 500m 기준	가맹계약서 <b>[별첨 1]</b> 지도에 표기

- ※ 귀하의 영업지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구역, 세대수, 거주 인구수, 유동 인구수, 가맹점 간 거리, 지역 상권의 특성, 주요 근린시설,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당사와 귀하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백화점, 쇼핑몰, 할인점, 마트, 공항, 종합병원, 호텔, 시장, 영화관, 지하상가, 지하철 내, 지하철 및 철도와 연결되어 있는 역사, 휴게소, 놀이동산, 관광지, 대학교 내 등 집합매장 내 가맹점은 특수상권으로 분류되어 독립된 영업지역으로 구분합니다.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영업지역을 재조정하는 경우에 가맹 점사업자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와 동의를 구하는 방법
- ☞ 당사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동의를 얻어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가맹사업법」시행령 제13조의4에서 정하는 사유

- 1.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4.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미리 알리는 절차	동의를 구하는 방법
재조정 사유 발생→당사 담당팀 검토→영업지역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 통지→30일 이내에 동의
변경(안) 작성→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여부 회신→가맹점사업자 동의 시 15일 이내 영업
→가맹점사업자 동의→영업지역 변경 완료	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가맹점사업자
(→가맹점사업자 미동의→영업지역 변경 불가)	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규 점포 입점 불가)

- ※ 영업지역을 재조정하기 위해 귀하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당 사는 귀하의 영업노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귀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보장받은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 해당 없음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상품 이나 용역을 거래하고 있는 경우 이에 관한 내용
- ☞ 해당 없음 : 당 사는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 급하지 않습니다.

- 6) 가맹본부가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고 있는 경우 이에 관한 내용
- ☞ 해당 없음 : 당 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 귀하는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가맹점 위치 및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다만, 귀하가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사에 서면으로 요청할수 있으며, 당사는 변경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귀하에게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귀하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고 있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	-	-	-

- ※ 2023년의 직영점 및 가맹점 현황은 양수도 이전 가맹본부의 정보이며, 각 가맹점별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하여 산정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각 가맹점별 POS 시스템 및 매출액 집계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

- 5.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 및 수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 1) 가맹계약의 기간 및 계약 갱신 기간
- ☞ 『밀겨울』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5]년입니다. 다만,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갱신일로부터 만 [5]년씩 갱신합니다.

(취**진성종합식품** 『밀겨울』

#### 2)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가맹사업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 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가맹사업법」상 갱신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가맹 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가맹 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

####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순 서 - 1	기 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귀하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당사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당사가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귀하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또는 E	

순 서 - 2	기 간 (계약만료일: D-day)
<ul><li>⑦ 당사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li><li>예→B, 아니오→⑧</li></ul>	D-180 ~ D-90
<ul><li>⑧ 귀하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li><li>예→E, 아니오→A</li></ul>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을 종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 ※ 위 표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재계약 및 종료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또는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또는 D. 양자가 합의하여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하는 경우
- ☞ 귀하가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당 사는 당해 다른 신규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기준으로 새로운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호 협의 하에 특별약정의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기존 계약내용에서 변경되는 조건이 없는 경우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2)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또는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을 종료 하는 경우
- ☞ 귀하는 계약기간 만료 및 해지로 종료하는 경우, 계약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간판 및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등 영업표지가 표시된 모든 시설물, 집기, 비품 등의 철거를 완료하여야 하고, 당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반환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당사의 지적재산권의 침해 및 무단 상표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위반일 1일당 금 이십만원(₩200,000)의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일반해지, 즉시해지, 합의해지 등 3가지로 그 사유 및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일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동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당사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진성종합식품** 『밀겨울』

#### 당사의 일반해지 사유

- 1. 귀하가 영업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귀하가 상품대금 결제 및 로열티를 2회 이상 연체하는 등 채무불이행의 경우
- 3. 귀하가 임의적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하거나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을 이전한 경우
- 4. 귀하가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당사가 정한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
- 5. 귀하가 지정된 영업장소 외에서 영업활동을 하거나 상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 6. 귀하가 당사의 영업표지를 임의로 변경하여 당사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 7. 귀하가 가맹점 운영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8. 귀하가 당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 9. 귀하가 고의 또는 과실로 On-Line 및 Off-Line 상에서 당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훼손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 10. 귀하가 계약기간 중 동종의 가맹점을 영위하거나, 그러한 가맹점의 영업에 참여하고 그와 업무를 제휴하는 경우
- 11. 귀하가 가압류 또는 가처분(단순 채권보전인 경우 제외), 조시체납처분 등을 받은 경우
- 12. 귀하가 사전 동의 없이 당사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하여 배포 등을 한 경우
- 13. 귀하가 당사에 보고한 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한 경우
- 14. 귀하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당사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 15. 당사의 품질관리 기준을 3개월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 16. 귀하가 본 계약서상에서 정한 일체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 17.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당사에 해지권이 유보되거나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18. 귀하가 대금지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19. 귀하가 당사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프로모션, 캠페인, 제휴카드, 상품권, 신메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실시하지 않는 경우
- 20. 귀하가 당사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세미나를 연1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 귀하의 일반해지 사유

- 1. 당사가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당사의 기타 권리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당사의 귀책사유로『밀겨울』가맹사업시스템의 명성이나 신뢰가 훼손되어 귀하의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우

#### (2) 즉시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최고 절차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즉시해지 사유 - 1

- 1. 당 사 또는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당 사 또는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3. 당 사 또는 귀하가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즉시해지 사유 - 2

- 4.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당 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5.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sub>(15월 이 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sub>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 6. 귀하가「가맹사업법」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 7.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8.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9.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3) 합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와 귀하는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문서에 의하여 합의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계약의 상대방에게 2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하고, 합의 해지가 완료될 때까지는 본 계약에 의한 각자의 권리를 가지며,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 조건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 귀하와 상호 합의하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가맹계약서의 효력 발생 후 양 당사자 간의 상호합의 하에 기명날인이 추가 작성된 문서는 본 계약 의 추가 부분으로써 그 효력의 발생을 인정합니다.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및 양도, 상속에 필요한 절차
-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가능시 필요한 절차
환매	불가능	-	환매제도 운영 안함
양도	승인 후 가능	가맹점운영권 등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 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양수인과 가맹 본부 양도양수 계약 또는 신규 가맹계약 체결→계약 체 결 조건에 따른 가맹금 입금→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상속	상속인 승계의사 통지 시 승인 후 가능	가맹점운영권 등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승계의사 통지→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시 상속인과 가맹본부와 잔여기간에 대한 가맹점운영권 이전 계약 체결→교육비 부담 및 개점 전 교육 이수→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 ※ 양도양수 시 가맹계약 외 기타 부동산조건 및 권리문제에 대해서는 당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 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의 범위는 직계 존비속에 한하며,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계약은 종료됩니다.

#### 2) 가맹점운영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지와 그에 필요한 조건

☞ 귀하가 직접 가맹점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의 승인 후 점장 등을 고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경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대리경영	승인 후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대리경영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대리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시 대리 경영
위탁경영	불가능	-	-

※ 당사가 승인하는 대리인의 조건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합니다. 또한, 영업 중 당사가 지 정하는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고, 개점 전 교육비는 귀하 또는 교육을 이수하는 자가 부담하 여야 합니다.

#### 3) 가맹점 사업자의 경업금지 범위

☞ 귀하는 계약기간의 존속 중 동일한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의 허락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에, 귀하가 경업을 하기 위해서는 1개월 전 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칼국수 전문점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승인 요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 귀하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가 있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등의 제한에 대한 내용

☞ 당사는 가맹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1:00~21:00, 일 10시간 이상	주 6일 이상	연속하여 6일 이상 휴업불가	

※ 귀하가 부득이하게 연속하여 휴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휴업 개시 7일 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가맹사업법」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5) 가맹점사업자가 고용하도록 권장되는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의 종업원 수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비고
가맹점사업자 포함 2명	직접 근무	49.5㎡(약15평) 기준

####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을 관리·감독하는지와 관리·감독하는 항목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방문 및 유·무선 등을 통하여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위생, 매출현황, 각종 설비 관리, 필수공급 원부재료 사용여부 및 보관관리, 당사의 운영지침 준수여부 등	담당자 매장 방문→관리내역 점검 →상담일지 작성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방문 및 유·무선 등을 통하여 월 1회 이상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당사는 『밀겨울』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당	<b>計비율</b>	분담 절차	비고
TE	9 T 9 H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T 급 결시	-1-T-
	상품광고			행사 계획 공고→가맹점주들의	민준에게 과그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행사동의→ 행사 시작 (단, 광고 성격상	- 대중매체 광고 -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 전체 가맹점사업자
EM 6M	가맹점 모집광고			분담비율을 조정하여야 함이 상당할 경우 조정가능함)	의 50%이상 동의 가 있는 경우 시행
	판촉물 제작				
판촉 전체 행기	상품권 발행	별도	E 협의	행사 계획 공고→디자인 및	- 월별판촉행사 - 전체 가맹점사업자
전체 행사	할인 및 경품 등 제공 판촉행사			기념품 등 시안 제시→ 행사 시작	의 70%이상 동의 가 있는 경우 시행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서비스	BC카드 포인트			별도 협의	

※ 귀하는 당 사가 진행하는 전국적인 광고 및 판촉의 경우 전국 가맹점사업자 <u>70% 이상</u>이 시행여부 및 주요 내용에 찬성한 행사의 경우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고, 지역 광고 및 판촉의 경우 해당 지역 가맹점사업자 <u>50% 이상</u>이 시행여부 및 주요 내용에 찬성한 행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 사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위 내역은 당 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별개로 광고 및 판촉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 귀하는 귀하의 비용으로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개별적인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광고 및 판촉의 계획과 문안, 기타 광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당 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진성중합식품 『밀겨울』

#### 3) 가맹점사업자가 일부의 광고 및 판촉 비용을 부담한 경우 집행내역 통보 내용

☞ 당 사는 사업연도 중 귀하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 및 판촉행사를 시행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귀하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 집행내역 통보 내용

- 1.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 및 판촉행사(해당 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별 명 칭, 내용 및 실시기간
- 2. 해당 사업연도에 광고 및 판촉행사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 3.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 및 판촉행사로 집행한 비용 및 귀하가 부담한 총액
- ※ 귀하가 세부 산출근거가 포함된 광고매체별 광고 횟수·단가 또는 판촉행사 집행 내역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열람의 일시, 장소를 정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9.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 당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영업비밀 및 경업금지 유지 의무로 규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귀하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당사의 영업상 비밀이나 노하우를 본 계약기 간 동안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있는 경우 당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귀하는 당사가 제공하는 표준 인테리어매뉴얼,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교육·훈련 자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자료를 당사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으로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일 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있는 경우 당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귀하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당 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동일 지역 내에서 경쟁회사 또는 당 사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있는 경우 당 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귀하는 상기 계약한 내용과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본 계약 브랜드와 동일한 업종을 창업, 지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있는 경우 당 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 10.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당사가 정하는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 50 조 [손해배상]

- 1.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 "갑"과 "을"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및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

생하는 경우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 "갑" 또는 "갑"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
- 4. "을" 또는 "을"의 피고용인이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후 제23조(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거 나 계약기간 중 제24조(경업 금지 의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갑"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을"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5. "을"이 본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4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을"은 제1항의 손해배상 외에 "갑"의 지식재산권의 무단사용에 대한 위약금으로 1일당 일금 이십만원(\(\pi 200,000\)<\(\psi \) 부가세 없음>을 지급하여야 한다.
- 6. "을"이 제29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이 지정한 판매방식이나 유통채널을 위반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서 금오백만원(₩5,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7. "갑"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갑"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갑"은 본 조의 위약벌 규정과는 별도로 "을"의 본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을"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최초계약체결일부터 계약기간동안 "갑"이 지원한 금액과 잔여계약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갑"의 수익("갑"의 기대수익, 로열티 또는 기타 정기납입금의 미지급분 등), 그리고 해당 지역에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한 추가 비용 등이 손해배상금으로 청구될 수 있다.

㈜**진성종합식품** 『밀겨울』

# 6.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개시까지 필요한 절차, 각 절 차에 걸리는 기간, 비용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을 위한 상담 협의 과정에서부터 실제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할 때까지 필요한 절차 및 기간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부가세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9.5m²(약15평) 기준 / 당사 전체 시공 시	약 [ 42 ]일 내외	10,800,000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및 상담 - 담당자 배정	D-42(1일)	비용 없음
사업설명 및 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가맹점현황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D-41(1일)	비용 없음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 희망지역 입지 타당성 분석 및 선정	D-26~40(15일)	자체 비용 소요
최종협의	- 임대차 계약 체결	D-25(1일)	자체 비용 소요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D-24(1일)	예치 가맹금 : 9,700,000
점포 실측 및 설계	- 인테리어, 간판, 주방 등시공비용 산출 - 시공 계약 체결	D-22~23(2일)	
각종 공사	<ul><li>인테리어 및 외관 시공</li><li>주방 시공</li><li>각종 집기 입고 완료</li><li>각종 인허가 취득</li><li>교육 실시(공사기간 중 교육)</li></ul>	D-2~21(20일)	자체 비용 소요
개점준비마무리	- 공사 완료 - 초도물품 입고 완료	D-1(1일)	초도물품 : 1,100,000
개점	-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작	D-day	자체 비용 소요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 개설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가맹 상담, 점포 선정, 임대차 계약, 가맹계약 체결 등의 소요시간과 매장의 규모 및 공사 일정, 인허가 일정 등으로 인해 그 기간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취**진성종합식품** 『밀겨울』

#### 2. 가맹계약 체결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절차

-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본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당 사와 귀하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가맹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취지 기타 상 관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2) 전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당 사와 귀하의 협의에 의하여 전항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당서 또는 귀하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 사와 귀하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진성중합식품 『밀겨울』

# 7.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 개선 시 가맹본부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 ☞ 당사는 점포환경 개선을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 ※ 다만, 계약 갱신 시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에 준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가맹사업 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등 불가피한 경우 매장의 노후시설이나 설비의 보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귀하는 귀하의 비용으로 계약 종료 전일까지 보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 귀하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귀하의 비용으로 점포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 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 없으며,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2. 판매촉진 행사 시 인력지원 등 가맹본부가 지원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 내용

☞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원)

구분	주요 내용	지원 조건	지원 기간	지원 금액	비고
개점 시 판촉물 지원	전단지, 명함, 배너 지원	계약기간준수 영업방침준수 계약내용준수	개점 시 1회	약 250,000 내외	지원조건 위반 시 즉시 청구
개점 시 초도물품 지원	유니폼, 포장용기, 포스터, 메뉴판, 매장부착물 지원	계약기간준수 영업방침준수 계약내용준수	개점 시 1회	약 650,000 내외	지원조건 위반 시 즉시 청구
개점 시 온라인 홍보 지원	SNS, 블로그 등 오픈 홍보 지원	계약기간준수 영업방침준수 계약내용준수	개점 시 1회	약 500,000 내외	지원조건 위반 시 즉시 청구

#### 3.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경우 그 구체적 방식 및 내용

- ☞ 당사는 귀하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귀하와 협의하여 당사의 비용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경영지도 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귀하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 귀하는 귀하의 비용부담으로 당사에 경영지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당사는 귀하여 협의 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을 기재한 경영지도계획서를 제시한 뒤 일정에 따라 경영지도를 진행하며, 경영지도 후 경영지도결과 및 경영 개선방안을 귀하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4.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각종 금융기관의 신용 제공을 주선하는 경우, 신용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및 신용 제공 금액
- ☞ 해당 없음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제도를 운용하는 경우 지원 조건 및 금액
- ☞ 해당 없음 : 당 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제도를 운용하지 않아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진성종합식품

# 8.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및 필수적 사항인지 여부

☞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필수여부
	1일차	프랜차이즈시스템, 본사시스템 이해 및 메뉴이론교육, 물류			
	2일차	조리실기(장비, 기물 사용법) 교육			
개점 전 교육	3일차	조리실기 교육	이론 및 실습교육 개업 전일		필수
	4일차	조리실기 교육			
	5일차	조리실기 교육 및 포스, 서비스, 매장운영(매니지먼트)에 관한 총괄 교육			
정기교육	가맹사업	h맹사업 통일성 유지와 전문성 유지에 관한 교육		추후 통지	필수
특별교육	신	메뉴 출시 및 조리메뉴얼 변경 등	실습교육	추후 통지	필수

※ 개점 전 교육은 1일차 교육은 가맹본부에서 진행하고, 2일차~5일차 교육은 예비 가맹점주 매장에 서 직접 진행하며, 교육내용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부가세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교육인원	비고
개점 전 교육	5일	2,200,000	가맹점사업자 포함 2인	계약 체결시 예치
정기교육	추후 통지	산출내역 서면 통지	추후 통지	연 1회
특별교육	추후 통지	산출내역 서면 통지	추후 통지	비정기적

※ 교육일정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 및 직원 모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4.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가맹점사업자가 불참할 경우에 가맹본부로 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 귀하는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점을 할 수 없으며, 점포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이에 개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니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기간 중 당사가 정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갱신이 거절되거나 물품공급중단 및 가맹계약해지 사유가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9.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	-	-

-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진성종합식품** 『밀겨울』

# [ 별첨 1 ] 최근 3년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진성종합식품** 『밀겨울』

#### [ 별첨 2 ] 당 사가 정한 판매상품 및 권장가격 내역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역을 당사에 문서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진성종합식품** 『밀겨울』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제공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법」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 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다만, 개 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